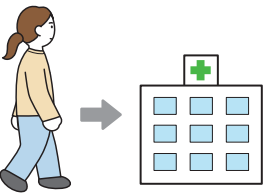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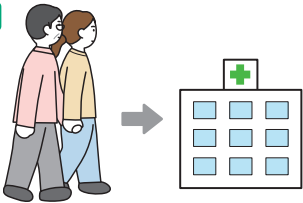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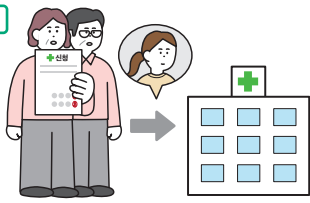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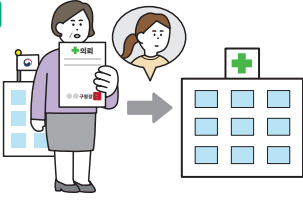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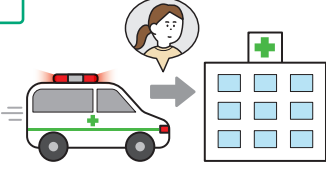


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

이름: _____ 성별/나이: _____

이 서식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지켜져야 할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. 나의 입원 유형, 퇴원 방법,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
나는 **병원**에 **자의 / 동의 / 보호 / 행정 / 응급** 입원 하였습니다.

	입원	퇴원
<input type="checkbox"/> 	자의입원 내가 입원을 결정합니다.	•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	동의입원 나와 보호의무자 1명이 입원을 결정합니다.	•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. • 다만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 요청 후 72시간 내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바뀌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	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신청합니다.	•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	행정입원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한 입원입니다.	•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	응급입원 나의 위험을 발견한 누군가가 신청하여 경찰과 의사가 동의하면 입원이 됩니다.	• 3일 동안 입원합니다. •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입원유형으로 바뀌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.

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라면 확인해 주세요.

- 1 내가 어떤 유형의 입원을 했는지 잘 알고 있나요?
- 2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나요?



나는 1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, 2정신건강심사위원회, 3법원, 4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보호입원, 행정입원 해당

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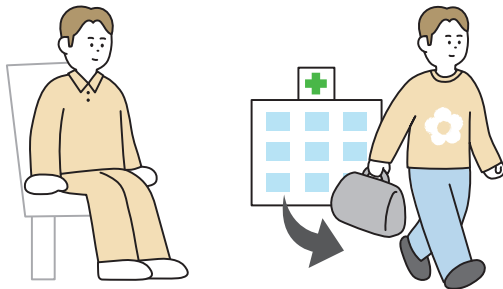
모든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해 입원이 필요했는지, 입원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합니다.



-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했다면 1개월 안에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습니다.
- 조사원과의 면담(대면조사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-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나의 입원이 필요했는지, 입원 과정에서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봅니다.
-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.



- 심사에 따라 입원 유지 또는 퇴원이 결정됩니다.
- 퇴원 결정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.

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의사, 변호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회복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
모든 입원유형 해당

2 정신건강심사위원회

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•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는
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퇴원을 원하는 경우
- 치료환경을 더 좋게 바꾸고 싶은 경우(처우개선)

*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
아래 내용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.

-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
- 처우개선
- 3개월 안에 재심사
- 다른 병원으로 이동
- 외래치료 지원
- 입원 유지
- 입원 유형 변경(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)



•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
14일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그 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보호입원, 행정입원 해당

퇴원을 원하는 경우

3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 신청

더 궁금하다면?

통합콜센터 ☎1661-9797

모든 입원유형 해당

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를 당한 경우

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신청

더 궁금하다면?

인권상담조정센터 ☎1331 또는 '인권e' 검색

-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필기도구는 병원에서 제공합니다.
-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병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보내드립니다.



법으로 보호받는 나의 권리입니다.

권익보호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



교육, 고용, 시설이용 등
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



나의 동의 없이는
녹음·녹화·촬영 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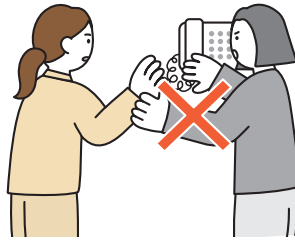
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
노동 강요 금지

특수치료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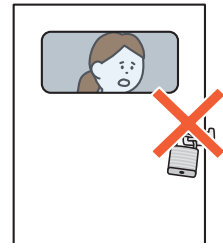
내가 동의해야만
특수 치료 가능

통신과 면회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



치료목적으로 의사의
지시에 따라 최소한의
범위에서만 제한

신체활동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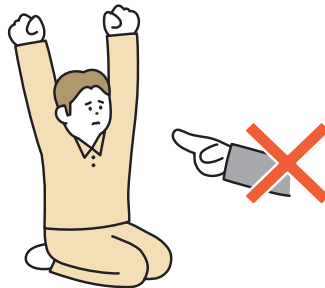


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
다치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
의사의 지시에 따라 격리·강박

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



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
장소에만 수용 가능



폭행 또는
가혹행위 금지

기록 열람 의료법 제21조



병원기록을 보거나
복사본 요청 가능

나는 병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

년

월

일

시

분에 받았습니다.